논산

시 보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797호 2018.8.20(월)

고 시

• 제2018-138호 :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 1

공 고

• 제2018-1238호 : 운행정지자동차 공시송달공고 ····· 4
• 제2018-1259호 : 전기사업(태양광발전사업) 양도양수인가 공고 ····· 5
• 제2018-1260호 : 전기사업(태양광발전사업) 양도양수인가 공고 ····· 6
• 제2018-1261호 : 전기사업(태양광발전사업) 양도양수인가 공고 ····· 7

공 고 (입법예고)

• 제2018-1245호 : 논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8
• 제2018-1252호 : 논산시 민원상담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9
• 제2018-1266호 : 논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25

회람							

• 발 행 : 논산시 • 편 집 : 열린홍보실 ☎ 746-5141

논산시고시제2018-138호

도로명주소 고시

신축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7일

논 산 시 장 

○ 도로명주소 고시 :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동안로 410-103 외 1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지 참 조(10건)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사유
별 지 참 조(0건)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별 지 참 조(2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 민원토지과(☎041-746-5645, 5646)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8. 1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논산시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부여)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1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신화리 1370-7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동안로 410-103	20081201	편안함을 주는 땅이란 의미의 득안성의 동쪽에 있는 도로라는 의미로 동안로라고 명명
2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천동리 588-16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사계로 526	20081201	사계는 조선 예학의 태두로 불리는 김장생 선생의 호로서 충절과 예학의 고장인 논산을 부각시키고자 도로명 부여
3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반송리 451-6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남마구평1길 55-16	20081201	남마구평길의 시작점에서부터 첫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4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천호리 197-6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계백송정8길 11-21	20081201	계백로의 시점에서 송정리를 지나는 여덟번째 분기 도로
5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11-12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계백송정8길 11-14	20081201	계백로의 시점에서 송정리를 지나는 여덟번째 분기 도로
6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청동리 188-1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청동로 81	20081201	행정구역명칭(청동리)을 이용하여 청동길로 명명
7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어곡리 312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만어4길 46-13	20090909	만어길의 시작점에서부터 네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8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중산리 319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중산1길 264-18	20090909	중산길의 시작점에서부터 첫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9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중산리 431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중산2길 39-15	20090909	중산길의 시작점에서부터 두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10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야촌리 255-1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야촌1길 42	20081201	야촌길의 시작점에서부터 첫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논산시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폐지)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1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청동리 188-1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청동로 79	20180816	건축물 멸실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2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청동리 188-1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청동로 81	20180816	건축물 멸실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논산시공고제2018-1238호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를 제출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운행정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의거하여 운행정지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
2. 공고기간 : 2018. 8. 13. ~ 2018. 8. 28. (15일간)
3. 공고대상 : 54누9623 (소유자 : 기*라)
4. 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받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 될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논산시 차량등록부서(☎041-746-6314)로 문의 바랍니다.

2018. 8. 13.

논 산 시 장

논산시공고제2018-1259호

전기사업의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사업(태양광발전사업)의 양수를 인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8. 17.

논 산 시 장

구분	양 도 자	양 수 자
발전소명	에코M 태양광발전소	에코M 태양광발전소
설치장소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양촌리 산40-1 (1필지)	
발전용량	400㎾ (380V)	
인가내용	태양광발전 모든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는 조건	
사업자명	송 윤 호	㈜제이앤케이 김 태 성
사업자주소	전라북도 완주군	경기도 수원시
허가(인가)일	2014. 10. 15.	2018. 08. 17.

끝.

논산시공고제2018-1260호

전기사업의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사업(태양광발전사업)의 양수를 인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8. 17.

논 산 시 장

구분	양 도 자	양 수 자
발 전 소 명	경선원에너지	아폴로 1호
설치장소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등리 397, 400-1 (2필지)	
발전용량	99㎾ (380V)	
인가내용	태양광발전 모든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는 조건	
사업자명	이 경 선	김 은 영
사업자주소	충청남도 계룡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허가(인가)일	2014. 11. 14.	2018. 08. 17.

끝.

논산시공고제2018-1261호

전기사업의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사업(태양광발전사업)의 양수를 인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8. 17.

논 산 시 장

구분	양 도 자	양 수 자
발전소명	월성2호 태양광발전소	월성2호 태양광발전소
설치장소	충남 논산시 성동면 원남리 930-9, 930-25 (2필지)	
발전용량	142.8㎾ (380V)	
인가내용	태양광발전 모든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는 조건	
사업자명	신 명 식	강 정 자
사업자주소	충청남도 서천군	충청남도 부여군
허가(인가)일	2017. 11. 28.	2018. 08. 17.

끝.

논산시공고제2018-1245호

「논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일

논 산 시 장

논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조직 개편에 따른 일부 서식의 내용 변경으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논산시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표서식(서식7, 8, 10) 내용 변경

- 「서식 7」 :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공익신고자 공개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서식 8」 :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 공익신고자 공개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서식10」 : 포상금 지급대상 추천서

▶ 처리 부서 변경 : 공익보호지원과 → 신고자보상과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단체는 2018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논산시장(참조 청렴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제출처 및 문의 : 논산시청 청렴감사실 감사팀

- 주 소 : (우) 32987 /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내동)

- 전 화 : 041)746-5102 / 팩 스 : 041)746-5109

다.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청렴감사실 감사팀(전화: 041-746-510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논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개정규칙안

논산시 규칙 제 호

논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논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안자	청렴감사실장	김 용 신
	감 사 팀 장	성 경 섭
	담 당 자	이 상 권 (746-5102)

■ 논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급 대상자	지 급 요 건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포상금	공익신고자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구조금	공익신고자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내부 공익신고자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논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8호서식]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 **우리 기관에서 이송한 공익신고 사항 처리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 공익신고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및 피신고자 보호(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 제5항, 제12조 제1항)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1.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 조사기관등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종료 후**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법 제12조 제1항)

가.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됨

나.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

다. "나"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됨

○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조사·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해야 합니다.

2. 공익신고 처리 시 피신고자 보호

○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됩니다.(법 제10조 제5항)

■ 논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추천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90일
① 추천기관	추천기관명				
	소관부서	(전화번호)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소 속				
	직업(직위)				
	[ ] 내부 공익신고자			[ ] 외부 공익신고자	
	[ ]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함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함.				
③ 추천사유					
④ 공익신고 조사결과	신고기관			신고일자	20 년 월 일
	신고내용				
	조사수사기관			결과통지일자	20 년 월 일
	통지내용				
⑤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청구여부	[ ] 있음 (기관명 :) [ ] 없음			
	수령여부	[ ] 있음 (금액 :) [ ] 없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첨부서류 :

20 년 월 일

⑥ 추천인 : 직위 성명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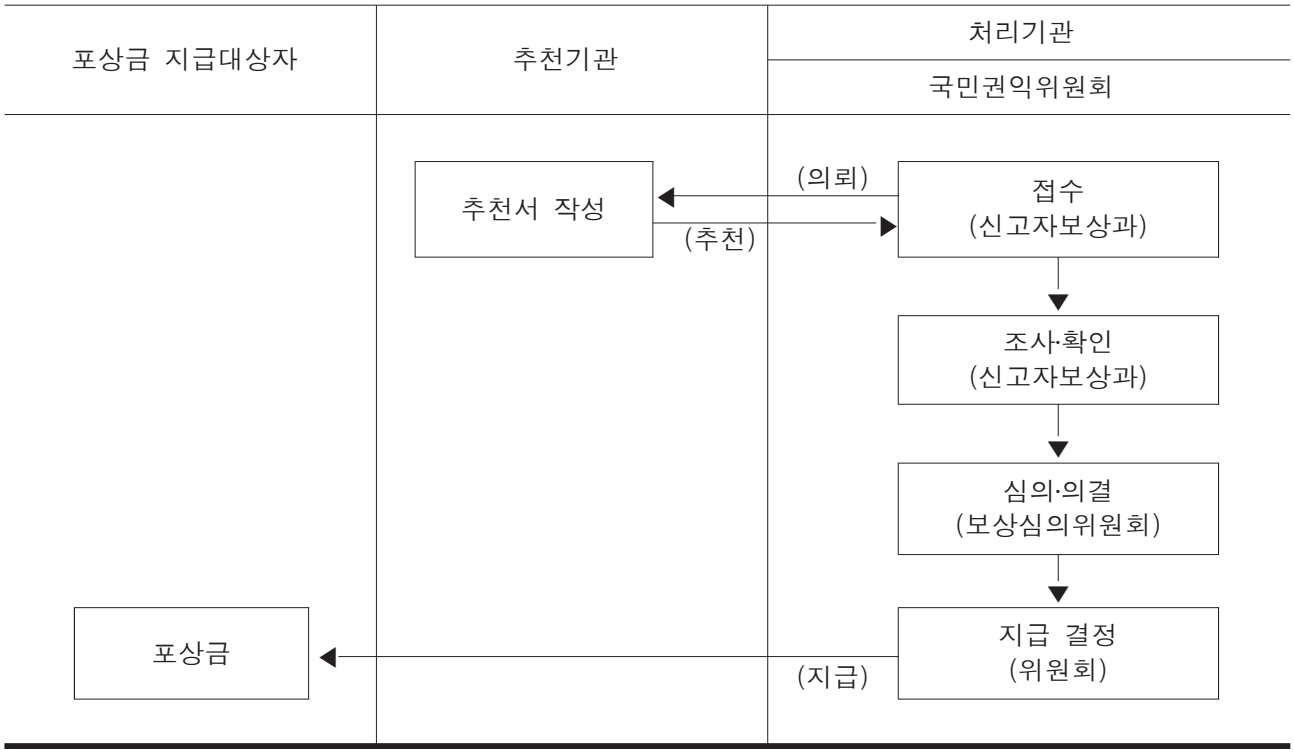
※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등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신고 및 조사 등에 관한 자료 사본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작성요령

1. ① 란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하는 기관의 기관명, 소관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② 란에는 추천하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및 소속과 직업을 기재하고, 내부 공익신고자인지 외부공익신고자인지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또한, 제22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구하였음을 [ ]에 ✔를 표시합니다.
3. ③ 란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하는 사유를 6하 원칙에 따라 간략히 기재합니다.
4. ④ 란에는 신청인이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기관명, 공익신고일자와 신고내용의 요지, 공익신고를 처리한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과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처리결과의 요지를 기재합니다.
5. ⑤ 란에는 신청인이 동일한 공익신고를 이유로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 상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6. ⑥ 란에는 추천기관의 소관 부서장의 직위와 이름을 기재하고, 관인을 날인합니다. 다만, 동 추천서를 추천기관의 관인이 날인된 공문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이 추천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논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 논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급 대상자	지 급 요 건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포상금	공익신고자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구조금	공익신고자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내부 공익신고자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급 대상자	지 급 요 건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포상금	공익신고자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구조금	공익신고자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내부 공익신고자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논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8호서식]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 우리 기관에서 이송한 공익신고 사항 처리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 공익신고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및 피신고자 보호(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 제5항, 제12조 제1항)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1.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 조사기관등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종료 후**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법 제12조 제1항)

가.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됨

나.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

다. "나"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됨

○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조사·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해야 합니다.

2. 공익신고 처리 시 피신고자 보호

○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됩니다.(법 제10조 제5항)

■ 논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8호서식]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 우리 기관에서 이송한 공익신고 사항 처리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 공익신고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및 피신고자 보호(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 제5항, 제12조 제1항)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1.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 조사기관등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종료 후**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법 제12조 제1항)

가.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됨

나.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

다. "나"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됨

○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조사·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해야 합니다.

2. 공익신고 처리 시 피신고자 보호

○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됩니다.(법 제10조 제5항)

■ 논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추천 일자		접수 번호		처리 기간	90일

① 추천기관	추천기관명			
	소관부서	(전화번호)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소 속			
	직업(직위)			
	[ ] 내부 공익신고자	[ ] 외부 공익신고자		
	[ ]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함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함.			
③ 추천사유				
④ 공익신고 조사결과	신고기관		신고일자	20 년 월 일
	신고내용			
	조사수사기관		결과통지일자	20 년 월 일
	통지내용			
⑤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청구 여부	[ ] 있음 (기관명 :) [ ] 없음		
	수령 여부	[ ] 있음 (금액 :) [ ] 없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첨부서류 :

20 년 월 일

⑥ 추천인 : 직위 성명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논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추천 일자		접수 번호		처리 기간	90일

① 추천기관	추천기관명			
	소관부서	(전화번호)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소 속			
	직업(직위)			
	[ ] 내부 공익신고자	[ ] 외부 공익신고자		
	[ ]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함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함.			
③ 추천사유				
④ 공익신고 조사결과	신고기관		신고일자	20 년 월 일
	신고내용			
	조사수사기관		결과통지일자	20 년 월 일
	통지내용			
⑤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청구 여부	[ ] 있음 (기관명 :) [ ] 없음		
	수령 여부	[ ] 있음 (금액 :) [ ] 없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첨부서류 :

20 년 월 일

⑥ 추천인 : 직위 성명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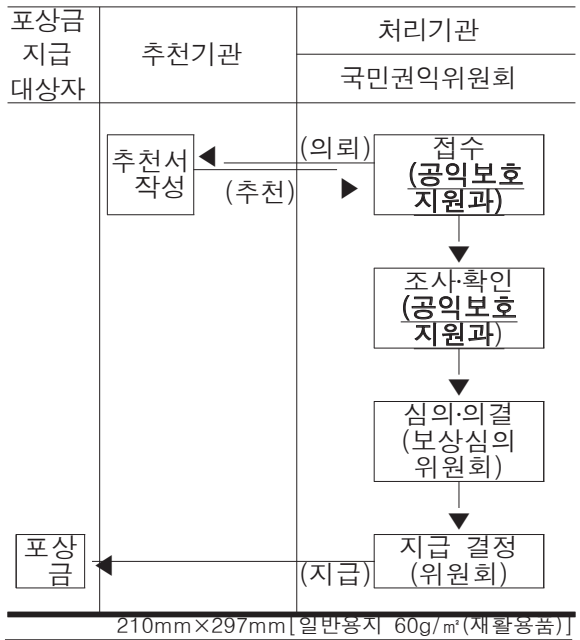
※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등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신고 및 조사 등에 관한 자료 사본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작성요령

1. ① 란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하는 기관의 기관명, 소관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② 란에는 추천하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및 소속과 직업을 기재하고, 내부 공익신고자인지 외부공익신고자인지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또한, 제22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구하였음을 [ ]에 ✔를 표시합니다.
3. ③ 란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하는 사유를 6하 원칙에 따라 간략히 기재합니다.
4. ④ 란에는 신청인이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기관명, 공익신고일자와 신고내용의 요지, 공익신고를 처리한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과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처리결과의 요지를 기재합니다.
5. ⑤ 란에는 신청인이 동일한 공익신고를 이유로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 상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6. ⑥ 란에는 추천기관의 소관 부서장의 직위와 이름을 기재하고, 관인을 날인합니다. 다만, 동 추천서를 추천기관의 관인이 날인된 공문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이 추천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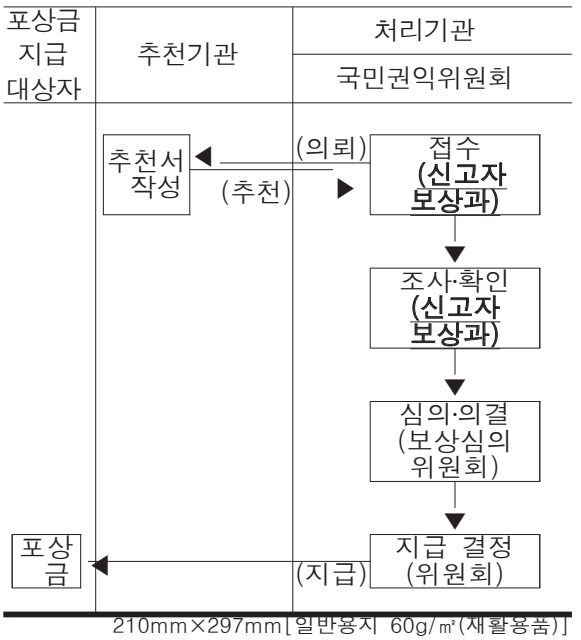
※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등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신고 및 조사 등에 관한 자료 사본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작성요령

1. ① 란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하는 기관의 기관명, 소관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② 란에는 추천하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및 소속과 직업을 기재하고, 내부 공익신고자인지 외부공익신고자인지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또한, 제22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구하였음을 [ ]에 ✔를 표시합니다.
3. ③ 란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하는 사유를 6하 원칙에 따라 간략히 기재합니다.
4. ④ 란에는 신청인이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기관명, 공익신고일자와 신고내용의 요지, 공익신고를 처리한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과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처리결과의 요지를 기재합니다.
5. ⑤ 란에는 신청인이 동일한 공익신고를 이유로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 상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6. ⑥ 란에는 추천기관의 소관 부서장의 직위와 이름을 기재하고, 관인을 날인합니다. 다만, 동 추천서를 추천기관의 관인이 날인된 공문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이 추천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논산시공고제2018-1252호

「논산시 민원상담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0일

논 산 시 장

논산시 민원상담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 계획에 따라 개선 권고된 현행 「논산시 민원상담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경쟁제한적 요소를 제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담원 위촉 시 자격기준을 20세 이상 50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보건 또는 간호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제한한 것을 삭제함.(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 9.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논산시장(참조:민원토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 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우)32987/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내동)

논산시청 민원토지과(☎041-746-5562, FAX 041-746-561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붙임 논산시 민원상담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민원상담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민원상담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상담원의 위촉)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서비스분야의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상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안자	민원토지과장	임 한 석
	민원행정팀장	이 재 성
	담 당 자	이 상 순 (746-5562)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상담원의 위촉)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상담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2조(상담원의 위촉) ---------- ---------- 민원서비스분야의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상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20세 이상 50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보건 또는 간호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삭 제>
2. 민원서비스분야의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삭 제>

붙임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ㅇ 해당없음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해당없음

나. 추계결과 : 해당없음

3. 작성자

민원토지과장 임 한 석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실) ① 민원실의 장은 민원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그 처리에 관한 모든 진행과정을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민원실에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민원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용지·필기구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담당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원실 시설·환경 등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 2 공정위 용역 결과보고서 발췌 참고자료

개선대상 자치법규

연번	개선대상 자치법규	조문(조항)	관련부서
1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6	도로교통과
2	논산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17	안전총괄과
3	논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	평생교육과
4	논산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4	평생교육과
5	논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6	자치행정과
6	논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9	사회복지과
7	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3	희망마을건설과
8	논산시 민원상담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민원토지과
9	논산시현수막지정게시대설치및관리조례	7	도시재생과

논산시공고제2018-1266호

「논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0일

논 산 시 장

논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사업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 중 협의체의 기능 등 일부 사항이 명확치 않아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에 대하여 세부사항 개정(안 제4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명시(안 제7조)

다. 별표 삭제(안 제7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3일까지 논산 시장 [참조: 환경과,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내동)]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과(전화 : 041-746-5543, FAX : 041-746-5519, E-mail : kajima@korea.kr)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논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안

2) 비용추계서

3)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논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의안번호	제 호

논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친절행정국장
제출연월일	2018. 8. .

참여예산실장 심사필

논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사업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 중 협의체의 기능 등 일부 사항이 명확치 않아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에 대하여 세부사항 개정(안 제4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명시(안 제7조)

다. 별표 삭제(안 제7조제1항)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2018. 08월

(2)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 08월

(3) 규제 심사 : 2018. 08월

(4)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

가. 예고기간 : 2018. 8. . ~ 2018. 9. .(20일 이상)

나. 예고결과 :

(5)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6) 충청남도 소관 실과 : 환경보전과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협의체의 기능)”을 “(협의체의 협의사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외의 부분) 중 “제3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를 “제3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협의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② 협의체의 구성원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나 사업선정을 할 수 없으며, 주민 전체이익을 위하여 당해사업을 계획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27조제1항 별표3의 지원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접영향권 내 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사업
2. 구충 및 방역약품 공급지원
3. 주민건강 및 보건향상 증진이 필요한 경우
4.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시설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5. 견학, 교육, 연수 등 지원

6. 기타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3조 규정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된 사업계획(별지 제1호 서식) 및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사업개시 전년도 10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후 보완·수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타당한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지원할 수 있다.

③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간접영향권의 주민에 대하여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성된 주민지원기금 범위 안에서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7조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지원 사업

별표(제7조제1항 관련)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환 경 과 장	이 한 철
안	환경자원팀장	박 승 선 (746-5541)
자	담 당 자	김 준 용 (746-5543)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협의체의 기능) 제3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기관의 선정 2.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협의 4.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제4조(협의체의 협의사항 등) ① 제3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기관의 선정 2.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협의 4.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5.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협의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신 설〉	② 협의체의 구성원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나 사업선정을 할 수 없으며, 주민 전체이익을 위하여 당해사업을 계획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 ①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 ① 영 제27조제1항 별표3의 지원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접영향권 내 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사업 2. 구충 및 방역약품 공급지원 3. 주민건강 및 보건향상 증진이 필요한 경우 4.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시설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5. 견학, 교육, 연수 등 지원 6. 기타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체는 시장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6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지원기금 사업계획 및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심의의결서 : 별지 제2호서식	② 제3조 규정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된 사업계획(별지 제1호서식) 및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를 사업개시 전년도 10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후 보완·수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타당한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지원할 수 있다.
③ 기금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③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간접영향권의 주민에 대하여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성된 주민지원기금 범위 안에서 가구

	별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10조(기금의 용도) ----------.
1. 영 제27조제1항에 다른 지원사업의 종류 중에서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 사업	1. 제7조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지원 사업
2. 기금의 100분의 5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	2. (현행과 같음)
[별표]	
지원사업의 종류(제7조제1항 관련)	〈삭 제〉

구 분	지 원 사 업
1. 소득향상	○ 농림축산수산업시설이 설치 ○ 상공업시설의 설치 ○ 관광산업시설의 설치
2. 복리증진	○ 의료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도로시설의 설치 ○ 상 · 하수도시설의 설치 ○ 교육문화시설의 설치 ○ 환경위생시설의 설치 ○ 운동 · 오락시설의 설치 ○ 전기 · 통신시설의 설치 ○ 교육기자재, 도서공급 및 학자금, 장학금 지급등의 생활보존 관련사업 ○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개선사업(냉 · 난방시설의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 그 밖에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의 고시 또는 논산시장이 정하는 사업
※ 비고 1) 지원사업의 내용에는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과 관련된 계획 · 조사 및 연구사업과 시설의 유지 · 보수 및 운영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 2)상 · 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붙임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없음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나. 추계결과

3. 작성자

환경과장 이 한 철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①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와 금액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별로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나 가구별로 할 수 있다.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기준·방법, 공개내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특히 필

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의 목적
2. 지원기간
3. 연차별 출연 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4. 지원사업이 내용과 지원기간 중 연차별 투자계획
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별표 3] <개정 2009.6.16>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제27조제1항 관련)

사업 구분	사업 내용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1. 소득증대 사업	농림수산업시설	공동영농·영어(營漁)시설(공동영농기계·공동축산·공동어선을 포함한다), 농기구 수리시설, 공동양식·양어장, 생산품 공동저장소, 공동가공공장, 농업용 저수지, 농로(農路), 임도(林道), 농업용수로, 농업용양수장, 농작물 및 임산물 재배시설 등
	상공업시설	공업용 수도, 직업훈련소, 시장, 공용창고, 구판장(購販場), 소규모 공단 등
	관광산업	휴게소, 휴양소, 토산품 판매장 등
2. 복리증진 사업	의료시설	보건진료소 등
	사회복지시설	노인회관, 마을회관, 공중목욕탕,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버스승차대기장 등
	도로시설	소규모 도로 등
	항만시설	소형선박용 항만시설, 소규모 어항, 호안옹벽(護岸擁壁), 방파제 등
	상하수도시설	상수도시설·하수도시설 등
	교육·문화시설	도서관, 유치원, 통학차, 문화시설, 향토박물관, 사적시설, 사회교육시설 등
	환경·위생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배수구시설, 청소차, 공중위생시설, 환경감시시설 등
	운동·오락시설	운동장, 야영장, 운동기구 등
	전기·통신시설	공용 전기시설 및 전화시설, 텔레비전방송공동수신시설 등
	그 밖의 시설	지역 난방시설 및 난방비 지원(소각시설만 해당한

		다),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 개선(냉방·난방시설의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등
3. 육영사업	컴퓨터·피아노 등 교육기자재 지원,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적립, 학교급식 지원 등	
4. 그 밖의 사업	그 밖에 소득증대사업·복리증진사업·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	

※ 비고 : 지원사업의 내용에는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및 육영사업 등과 관련된 계획·조사 및 연구 사업과 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 업무가 포함된다.